



지부교섭 속도

기본급 154,883원 인상
임금 안정성 쟁취!
공민권 행사 보장!

제07호 / '17.6.8(목)

발행처: 교육선전부 | 발행인: 김정태 |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 전화: 043-236-5077 | http://dc.kmwu.kr

이제 속도 좀 냅시다

2차 제시안 한참 멀었다



논의할 수준도 안되는 제시안

8일(목) 15시 보취에서 열린 9차 지부교섭에서 사측의 2차 제시안이 나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논의할만한 수준의 내용이 없었다. 각 사업장별 단협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적당히 구색만 갖춘 제시안이었다. 김정태 지부장은 “지부가 요구한 수준에 한참 못미친다. 안타깝다.”며 사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다

벌써 6월 둘째주다. 7월말 여름휴가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부 요구안이 조속히 마무리되지 않으면 지회별 임금안을 논의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지부교섭이 속도를 내야 지회별 임금을 심도있게 논의할 시간도 충분히 보장된다. 그래야 7월 휴가 전 타결까

지 이끌어낼 수 있다.

김정태 지부장은 “7월 첫 주까지는 지부요구안이 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7월 2주차에는 지회 집중 교섭을 들어갈 생각이다.”며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안했다. 사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승리의 기운을 널리 널리

금속노조는 7일 노조과괴 금지, 조선업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청와대 바로 앞까지 행진하여 노조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이전과는 세상이 많이 바뀐 모습을 확인했다. 지부에서도 코스모축매가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콘티넨탈이 해고자 원직복직에 합의하는 등 승리의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 기운이 2017년 임단투에도 그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9차 교섭 속기록

7월 3주차에는 마무리하자

사 : 9차 교섭까지 왔는데 쉽지 않은 과정인 것 같다. 시간 여유가 많지 않지만 노력해서 좋은 합의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

노 : 세상이 변하긴 변한 것 같다. 갑을, 유성,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했는데 청와대 바로 앞까지 행진했다. 그전에 비해 많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지부가 여기 안와야 할텐데'라는 생각을 했다. 지부가 거기 가는 일이 생기면 서로 많이 힘들 것이다. 그와 동시에 하늘이 우리 마음을 알고 단비가 와서 그나마 마음을 씻어주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오늘 사측이 제시안을 낸다고 했는데, 교섭위원들의 마음에 단비를 주는 제시안이 됐으면 좋겠다. 제시안 준비됐으면 전달해달라. 잠깐 정회해서 검토하고 진행하자.

〈정화〉

노 : 제시안 살펴봤다. 안타까운 건 지부가 요구한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임금안정성 제시안도 지부요구안을 전혀 못받겠다는 입장이라 수용할 수 없다. 공민권 보장 제시안도 거리가 멀다. 우리가 별도로 요구한 것도 안이 제시가 안됐다. 전반적인 내용이 제시돼야 지부교섭이 마무리될 수 있다. 이후에 전향적인 안을 부탁한다. 지부가 고민하는 것은 7월 첫 주까지는 지부요구안이 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지회 임금 논의를 하고 7월 3주차에는 마무리할 수 있다. 임금안정성 요구안, 공민권 요구안, 별도요구안에 대해 전향적인 안을 빨리 제시해달라. 지부가 수용할만한 안을 냈으면 한다. 그리고 7월 2주차에는 지회 집중 교섭을 들어갈 생각이다. 지회 요구안도 꽤 있는 걸로 안다. 지회 요구안도 타결을 봐야 지부교섭이 마무리될 수 있으니 고민 좀 많이 해달라. 그리고 보쉬에서 별도 요구안 작년 합의 내용에 대해 6월 말까지 정리한다고 하셨는데.

사 : 그렇게 얘기했다. 방법을 찾고 있다.

노 : 노사 합의한 문제이다. 노사 간의 신의성실에 입각해서 합의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건 유감이다. 6월말까지 꼭 지켜달라.

사회 : 차기교섭은 6/15(목) 15시 대한이연에서 진행한다.

[2차 제시안]

1. 2017년 임금인상 : 추후제시

2. 임금안정성 확보를 위한 요구안

회사별 근무형태, 조업시간 등 근무환경이 다르므로 근무시간 중 병원 진료 목적의 조기퇴근 임금공제 여부는 각 사의 실정에 맞게 유지한다.

3. 공민권 행사 보장 요구안

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를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 또는 일수에 대해 임금 공제를 하지 않는다.

(가) 병역법에 따라 근무시간 중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의 병역의무를 수행할 때

(나) 국회, 법원에 공적인 사유로 증인, 참고인으로 출두할 때. 해당사업장 단체협약이 이를 상회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보궐선거에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근무로 인해 투표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투표시간을 보장한다.

(라) 천재, 지변의 사유로 순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단, 회사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함.

② 근무를 마치고 예비군 및 민방위 소집에 응한 때는 각 사별 근태처리 규정에 따라 익일 유급, 출근 연기 등을 적용한다.

③ 병역법에 의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때는 해당일을 유급으로 인정한다.